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05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2일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달호, 이준형, 고병국,
유 용, 김소양, 김제리,
이병도, 김화숙, 최웅식,
송아량, 최 선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고, 또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누락된 약칭을 정의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).

나.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).

다.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).

라. 문구 등을 법령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수정함(안 제18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”를 “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한 후”를 “실시한 후”로, “서울시의회”를 “의회”로, “일부 결과(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)”를 “서비스 평가 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거나, 재정”을 “하거나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”으로, “차등지원”을 “우선적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대중교통운영자는”을 “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”으로, “요구에 따라야”를 “이에 응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	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----------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----------.
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① ----------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서	② ----------실시한 후 ---- 의

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, 일부 결과(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)를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	회 ---------- ------- 서비스 평가 결과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,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 하거나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-- 우선적으로 --.
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------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------- 이에 응하여야 ---.